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11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김성원·김선교·박성훈

이종배 · 정동만 · 임이자

이인선 • 고동진 • 박충권

김정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 체(公·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 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609호)의 의결을 전제 로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9제3항 전단 중 "제33조의2, 제33조의3"을 "제33조의2부터 제 33조의4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9(취업지원) ① • ② (생	제7조의9(취업지원) ① • 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	③
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	
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	
의2, 제32조, 제33조, <u>제33조의</u>	제33조의
<u>2, 제33조의3</u> , 제34조, 제34조의	<u>2부터 제33조의4까지</u>
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	
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	
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	
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본다.	